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6. 1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5월 3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4일

라. 상정일자 : 제167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2012년 6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2012.3.16)에 따라 우리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구정의 성 주류화 확산 및 강화 도모

나. 주요내용

- 제2장 여성정책 부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조항을 추가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제의 도입을 규정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계획·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오고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전 성별통계 등 객관적 자료와 정책 시행에 따른 고객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과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원교육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체계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그 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보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여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토록 변경하여 관련 분야에 우수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안 제 20 조 제 1 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함.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5호
----------	------------

제안년월일 : 2012. 6.

제출자 : 이재형 위원 외 1명

1. 수정이유

- 여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토록 변경하여 관련 분야에 우수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 20 조 제 1 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 20 조 제 1 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 <u>연임할 수 있다.</u> ----- ----- -----.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 <u>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u> <u>할 수 있다.</u>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35 호
----------	---------

제출연월일 : 2012.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2012.3.16)에 따라 우리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주류화 촉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구정의 성 주류화 확산 및 강화 도모

2. 주요내용

- 가. 제 2장 여성정책 부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조항을 추가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제의 도입을 규정함.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15조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필요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4.26 ~ 5.16) 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 (3) 반부패영향평가 심사여부 : 심사완료

첨 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그 밖에 여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한다.

제2조 중 “기타 여성관계법령”을 “그 밖에 여성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타 여성관계법령”을 “그 밖에 여성 관계 법령”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 여성정책”을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여성정책 기본계획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 “기타”를 “그 밖의”로, “단체에 대하여”를 “단체에”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공단체에 대한”을 “유공단체를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등에 대한”을 “등을 위한”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을 “(공직 등의 참여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정책을 강구하여야”를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들에 대한”을 “이들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증진을 위해”를 “복지증진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라”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여야”를 “활동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동안에”를 “에”로, “보호 되도록”을 “보호되도록”으로 한다.

제13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질적수준향상”을 “질적 수준향상”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 중 “구에 소재하고”를 “구에”로, “기타”를 “그 밖에”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금의 범위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금의 범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큰 자”를 “큰 사람”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위원회”를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갓춘 자”를 “갓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때에 이를”을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기중”을 “임기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수입금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로”를 “각 호의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를 “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당해직”을 “해당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5. 주요항목인 장·관·항”을 “주요항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요항목인 장·관·항의”를 “주요항목”으로 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할”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을 “기금운용 기본계획수립”으로, “인정하는 때에”를 “인정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3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제2조(구의 책무)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2조(구의 책무) ----- ----- -----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 -----.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 그 밖에 여성 관계 법령----- ----- -----.		
제4조(여성정책 시행계획수립)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정책 시행계획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 ----- ----- 각 호-----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요정책 가. ~ 바. (생략)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주요정책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 -----		

현행	개정안
4. (생략) ②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6조(여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격려 3. (생략) 4.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8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경우 ----- 그 밖의 ----- ----- 단체에 -----. 제4조의2(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여성주간 행사) ----- --- 같은 법 시행령----- - 제26조에 따라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유공단체를 위한 -----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등을 위한 ----- 제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u>보육시설</u>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성차별 개선 등) ①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여 평등한 직장 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u>당해</u>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u>취하여야</u> 한다. ③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u>취하여야</u> 한다. 제11조(복지증진 등) ①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음 <u>각호의</u>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u>이들에 대한</u> 보호사업 2. (생략) 3. <u>기타</u>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구청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직	② ----- ----- -- <u>어린이집</u> ----- -----. 제10조(성차별 개선 등) ①----- ----- ----- <u>해당</u> ----- ----- -----. ②----- ----- ----- <u>하여야</u> -----. ③----- <u>발생</u> <u>시</u> ----- <u>하여</u> <u>야</u> -----. 제11조(복지증진 등) ①----- ----- ----- <u>각 호의</u> 정책을 마련하여 <u>야</u> -----. 1. ----- ----- <u>이들을 위한</u>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 ②----- ----- <u>복지증진에</u> ----- -----

현행	개정안
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생산 물품의 우선구매 촉진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 등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 제9조에 따라 ----- -----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 ----- 활동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
제12조(모성보호) 구청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 -----에----- 보호되도록 -----.
제13조(아동보육)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질적수준향상, 방과 후 보육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아동보육) -----어린이집----- ----- 질적 수준향상 ----- ----- 범위 -----어린이집-----.
제15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법 제3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와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금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단체의 지원) ----- ----- 구에 ----- ----- 그 밖에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제17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생략)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규정	제17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	개정안
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4. <u>기타</u> 여성문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2. 여성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3. (생략) 4.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u>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제2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 큰 사람----- ---. 제18조(설치 및 기능) ---- 각 호----- ----- 응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위원회</u>-----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 제1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1. ----- -- 있는 사람 2. ----- 갖춘 사람 3. (현행과 같음) 4.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u>(이하 “구의회”라 한다) ----- --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 ----- 남은 기간-----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2조(회의) ① (생략)	제22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 ----- ----- ----- 때에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과반수-- ----- 과반수-- -----.
제2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해촉) ----- 각호----- 발생한 경우----- -----.
1. 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때	1. ----- 임기 중 -----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밖의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26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①----- -----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
제27조(기금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	제27조(기금의 설치 등) ①----- ----- ----- 서울특별시 영등

현행	개정안
<u>구여성발전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2. (생략) 3. 기타 수입금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생략)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생략) 4.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생략) ③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u>	<u>포구 여성발전기금</u>----- -----. ②-----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수입금 제28조(기금의 용도)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에 따라 -----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 ----- -. ② (현행과 같음) ③제28조에 따른 ----- ----- 범위에서 -----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u>

현행	개정안
전기금융융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정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생략) 3.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제31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u>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u> ②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u>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u>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u>전기금융융심의위원회</u>-----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각호의 사람으로</u> ----. 1. <u>구의회</u> ----- 2. (현행과 같음) 3. ----- ----- ----- <u>위촉하는 사람</u> ④----- <u>해당직</u>----- ----- ----- ----- <u>남은 기간</u>-----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위원회의 기능) ①----- <u>각 호</u>-----. 1. ~ 4. (현행과 같음) 5. <u>주요항목</u> ----- ②-----<u>주요항목</u>----- ----- <u>변경 하려면</u> ----- ----- ----- <u>변경할</u> -----.

현행	개정안
제33조(회의) ① (생략)	제3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u>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u>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u>기금운용 기본계획수립</u> ----- ----- ----- 인정할 때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u>과반수이상</u>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u>과반수이상</u>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u>과반수</u> ----- ----- <u>과반수</u> ----- -----.
제3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u>범위안에서</u>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당 등) ----- ----- <u>범위</u> ----- -----. -----.
제3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u>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u>기금관리기본법</u> 」 제8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 ----- ----- <u>제8조제1항에 따른</u> ----- -----.
② 구청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u>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라</u> ----- ----- ----- -- <u>구의회</u> -----.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